고용노동부	보도설명자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**배포 즉시**	배포 일시	2022. 6. 28.(화)
담당 부서	근로감독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	책임자	과 장 장현석 (044-202-7994)
		담당자	사무관 이상전 (044-202-7973)

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건강권 보호조치와 병행하되, 전문가로 구성되는 “연구회”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6.28.(화) 한겨레(인터넷), “윤석열표 주69시간 근무, 노동부는 ‘과로’ 인정하고 있다.” 기사 관련

> ㅇ 고용노동부는 서둘러 ‘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휴식’을 도입해 과로 노동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. 이 경우 주휴일 유무에 따라 최대 80.5시간 또는 69시간을 ‘일시적으로 바짝’ 일할 수 있다.
>
> ㅇ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일 평균보다 30% 이상 증가한 경우 ‘단기 과로’로 분류돼 질병과 업무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. 가령 평소에 1주 평균 52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, 특정주에 그 30%인 15.6시간만 더 일해도(주67.6시간) 단기과로 요건에 해당한다.

2. 설명 내용

□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방향으로 기사 제목 등과 같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적이 없음

□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되는 “미래 노동시장 연구회”를 통해 근로시간 규정과 산재인정 기준의 의미와 취지, 양자 간의 관계, 11시간 연속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방안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